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21.] [고용노동부훈령 제541호, 2025. 4. 21., 제정]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705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全社会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 ②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고용서비스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을 보좌한다.
-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고용센터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용센터 진단·분석 및 업무체계 혁신방안 마련·추진
2. 적극적 취업지원대책 기획·총괄
3. 관계부처, 지자체 등 연계·협업기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4. 자영업자·건설일용직 등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개발·운영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1호 사무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2호 사무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3호 사무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4호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준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 2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41호, 2025.4.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